自動車保險 共同物件 事業方法書

「자동차보험 공동물건 위험배분에 관한 상호협정」에 의한 기초서류

1. 보험종목의 명칭

- 개인용자동차보험
- 업무용자동차보험
- 영업용자동차보험
- 이륜자동차보험

2. 보험종목별 가입대상에 관한 사항

개인용자동차보험, 업무용자동차보험, 영업용자동차보험, 이륜자동차보험의 가입대상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가. 개인용자동차보험 : 개인소유 자가용 승용차. 단, 인가된 자동차학원 또는 자동차학원 대표자 소유의 자동차로서 운전교습, 도로주행교육 및 시험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제외

나. 업무용자동차보험 : 위 “가. 개인용자동차보험”의 가입대상이 아닌 모든 비사업용자동차. 단, 이륜자동차는 제외

다. 영업용자동차보험 : 모든 사업용(영업용) 자동차

라. 이륜자동차보험 : 자동차관리법상 사용신고대상인 이륜자동차

3. 보험목적에 관한 사항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피보험이익 및 피보험자의 각종 위험에 관한 피보험이익을 보험목적으로 한다.

4. 보험기간

보험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첫날 24시에 시작하여 마지막 날 24시에 끝난다. 그러나 1년 미만 또는 1년 이상으로도 할 수 있다.

5.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주고 약관 및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자의 확인을 받는다.

6. 보험료 납입에 관한 사항

보험료는 보험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보험료 영수증과 상환하여 그 전액을 영수한다. 그러나 필요한 경우에는 분할하여 영수할 수 있다.

7. 판매채널에 관한 사항

범용 판매채널을 이용하여 판매한다.

8. 보험료 차등적용에 관한 사항

「자동차보험 공동물건 위험배분에 관한 상호협정」에서 정한 요율서에 따른다.

9. 특약에 관한 사항

보통약관에 첨부할 특약은 다음과 같다. 단, 긴급출동서비스특별약관 및 법률비용지원특별약관의 경우 각 사의 기준을 따른다.

가. 개인용자동차보험

- 만21세이상 연령한정 특별약관
- 만24세이상 연령한정 특별약관
- 만26세이상 연령한정 특별약관
- 만30세이상 연령한정 특별약관
- 만35세이상 연령한정 특별약관
- 만43세이상 연령한정 특별약관
- 만48세이상 연령한정 특별약관
- 가족 및 형제자매 운전자한정 특별약관
- 가족 운전자한정 특별약관
- 기명피보험자 및 지정1인 운전자한정 특별약관
- 부부 운전자한정 특별약관
- 기명피보험자 1인 운전자한정 특별약관

- 가족 및 지정1인 운전자한정 특별약관
- 부부 및 지정1인 운전자한정 특별약관
- 임직원 운전자한정 특별약관
- 유상운송위험담보 특별약관
- 주행거리연동 특별약관
- 보험료 분할납입 특별약관
-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특별약관
- 보험료자동납입 특별약관
-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 의무보험 일시담보 특별약관
- 기계장치에 관한 자기차량손해 특별약관
- 보험대차 운전중 사고보상 특별약관
- 자기차량손해 단독사고 보상 특별약관
- 장애인 전용 보험 전환 특별약관
- 전방충돌방지 장치 특별약관
- 차선이탈방지 장치 특별약관
- 품질인증부품 사용 특별약관
- *긴급출동서비스 특별약관

나. 업무용자동차보험
- 만21세이상 연령한정 특별약관
- 만24세이상 연령한정 특별약관
- 만26세이상 연령한정 특별약관
- 만30세이상 연령한정 특별약관
- 만35세이상 연령한정 특별약관
- 만43세이상 연령한정 특별약관
- 만48세이상 연령한정 특별약관
- 가족 운전자한정 특별약관
- 부부 운전자한정 특별약관
- 기명피보험자 1인 운전자한정 특별약관
- 임직원 운전자한정 특별약관
- 관용자동차에 관한 특별약관
- 도로주행 시험용 자동차에 관한 추가 특별약관
- 유상운송위험담보 특별약관
- 전차량일괄계약 자동담보 특별약관
- 보험료 분할납입 특별약관
-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특별약관
- 보험료자동납입 특별약관
- 기계장치에 관한 자기차량손해 특별약관
- 공작용자동차에 관한 자기차량손해 특별약관

- 농경용자동차에 관한 자기차량손해 특별약관
-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 의무보험 일시담보 특별약관
- 주차위반 피견인차량에 관한 대물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
- 자기차량손해 단독사고 보상 특별약관
- 자기차량손해 침수해 한정 보상 특별약관
- 장애인 전용 보험 전환 특별약관
- 전방충돌방지 장치 특별약관
- 차선이탈방지 장치 특별약관
- 자율주행차 위험담보 특별약관
- 품질인증부품 사용 특별약관
- *긴급출동서비스 특별약관
- *법률비용지원 특별약관

다. 영업용자동차보험
- 만21세이상 연령한정 특별약관
- 만26세이상 연령한정 특별약관
- 만30세이상 연령한정 특별약관
- 만35세이상 연령한정 특별약관
- 기명피보험자 1인 운전자한정 특별약관
- 임직원 운전자한정 특별약관
- 보험료 분할납입 특별약관
-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특별약관
- 기계장치에 관한 자기차량손해 특별약관
- 공작용자동차에 관한 자기차량손해 특별약관
- 의무보험 일시담보 특별약관
- 주차위반 피견인차량에 관한 대물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
- 자기차량손해 단독사고 보상 특별약관
- 자기차량손해 침수해 한정 보상 특별약관
- 장애인 전용 보험 전환 특별약관
- 전방충돌방지 장치 특별약관
- 차선이탈방지 장치 특별약관
- 품질인증부품 사용 특별약관
- *긴급출동서비스 특별약관

라. 이륜자동차보험
- 만21세이상 연령한정 특별약관
- 만24세이상 연령한정 특별약관
- 만26세이상 연령한정 특별약관
- 만30세이상 연령한정 특별약관

- 관용자동차에 관한 특별약관
- 전차량일괄계약 자동담보 특별약관
- 보험료 분할납입 특별약관
-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특별약관
- 의무보험 일시담보 특별약관
- 기계장치에 관한 자기차량손해 특별약관
- 자기차량손해 단독사고 보상 특별약관
- 장애인 전용 보험 전환 특별약관
- 대인・대물 자기부담금 특별약관
- 품질인증부품 사용 특별약관
- *법률비용지원 특별약관

10. 적용요율 기재에 관한사항

보험 청약서에는 담보종목별 적용보험료, 보험가입경력요율, 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 특별요율, 우량할인・불량할증요율 등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11. 자동차보험 우량할인・불량할증 적용상 유의사항

가. 보험료의 추징 또는 환급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체결 후 적용등급(률)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보험료를 추징하거나 환급함을 보험계약자에게 알려야 한다.

나. 계약체결 금지

(1) 개별할인할증

기존계약을 효력상실, 해지, 중복시키고 동 계약보다 적용등급이 낮은 다른 계약과 동일증권으로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인수할 수 없다.

(2) 단체할인할증

다음 각 항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인수할 수 없다.

(가) 보험기간의 시기와 종기가 서로 다른 보험료 적용기간에 걸치는 단기계약

(나) 동일보험료 적용기간 말일까지를 보험기간으로 하는 단기계약

(다) 기존계약을 효력상실, 해지, 중복시키고 동 계약보다 낮은 적용률로 체결하는 계약

12. 준용 규정

이 사업방법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별 사업방법서를 준용한다.